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31회 제1차 정례회

# 검토보고서

2019. 6. 19.(수)

순서	검토안건	제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	구청장



**행정건설위원회**  
(전문위원 유준상)

#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”

##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### 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제출자 : 구청장
- 제안일 : 2019. 5. 27.
- 회부일 : 2019. 5. 29. (의안번호 : 19 - 68)

### 2. 제안이유

- 마포문화원 지원·육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지역문화발전에  
이바지하기 위하여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·제도적 근거를 마련  
하고자 하는 것임

### 3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정목적(안 제1조)
- 구청장의 책무, 마포문화원장의 책무(안 제2조~안 제3조)
- 국·공유재산의 사용(안 제4조)
- 기금의 출연·조성, 운용·관리 등(안 제5조 ~ 안 제9조)
- 보조금 지원범위 및 신청·교부·정산 등 (안 제10조 ~ 안 제15조)
- 기금 등 회계관리 및 사무의 검사·감독 등(안 제16조 ~ 안 제18조)
- 예산의 계상 등(안 제19조)
- 시행규칙(안 제20조)

## 4. 관계법령

-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- 제3조(지방문화원의 육성 등) 제1항
- 제15조(경비의 보조 등)
- 제19조(조례의 제정)

## 5. 검토보고

- 본 조례안은 마포문화원 지원·육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·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- 본 조례안은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3조(지방문화원의 육성 등) 제1항과 제15조 및 제19조(조례의 제정) 규정에 의하여 마포문화원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구민이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
- 문화원에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의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 문화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, 나아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 내용으로는  
 안 제1조(목적)에서는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3조제1항,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문화원 지원·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근거조항을 명시함.
- 안 제2조(구청장의 책무)에서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마포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함.

- 안 제3조(마포문화원장의 책무), 안 제4조(국·공유재산의 사용)등은 문화원장은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고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포구 공유재산을 무상 대여 하는 내용을 명시함.
- 안 제5조(기금의 출연 및 조성), 안 제6조(출연금의 귀속), 안 제7조(기금 및 보조금의 운용 및 관리), 안 제8조(기금운용계획), 안 제9조(기금결산 및 보고) 등은 문화원의 기금을 출연 및 운용 관리에 내용과 결산 보고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.
- 안 제10조(보조금 지원), 안 제11조(보조금의 청구 등), 안 제12조(보조금의 결정 등), 안 제13조(보조금의 교부), 안 14조(보조금의 교부중지 등), 안 제15조(보조금의 정산) 등은 보조금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.
- 안 제16조(회계관리), 안 제17조(사무의 검사·감독), 안 제18조(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)등은 문화원의 회계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,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수 있도록 하고, 사업실적 및 계획제출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내용을 명시함.
- 검토의견으로는  
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에 따라 마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체계적 관리하기 위해 법적·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